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

##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-36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사유

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“ 「주택법」 ”에서 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”으로 변경  
(안 제1조, 제2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.
-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3. 23. ~ 4. 12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

###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29조의 규정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·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